

# 순천대학교 지역혁신플랫폼사업단 운영규정

제정 2020. 12. 9.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학칙 제14조의4에 따라 <지자체-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(이하 “이 사업”이라 한다)>을 수행하기 위하여 순천대학교(이하 “이 대학교”라 한다)에 두는 지역혁신플랫폼사업단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총괄대학”이란 이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중 대학부문을 대표하는 ‘전남대학교’를 말한다.
2. “중심대학”이란 이 사업의 각 핵심분야를 주관하는 대학으로 에너지신산업분야의 ‘전남대학교’와 미래형운송기기분야의 ‘목포대학교’를 말한다.
3. “참여대학”이란 이 대학교를 포함하여 핵심분야의 개별 과제를 수행하는 대학을 말한다.

제3조(사업단) ① 이 사업의 과제 추진을 위하여 참여대학으로서 이 대학교에 두는 사업단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신재생농업에너지 지역혁신플랫폼사업단: 에너지신산업분야
2. 첨단 부품·소재 지역혁신플랫폼사업단: 미래형운송기기분야

② 각 사업단에는 단장을 두며, 단장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한다.

제4조(기능) 사업단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이 사업 핵심산업분야의 인력양성 및 기술고도화 과제 수행
2. 이 사업을 위한 대학교육혁신 과제 수행
3. 지역산업체, 지자체, 지역혁신기관과의 협업환경 조성 및 활성화
4. 이 사업 과제 추진상황 점검 및 성과관리
5. 그 밖의 이 사업 수행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운영) ① 각 사업단은 사업단별 중심대학으로부터 예산 등의 지원을 받아 운영한다.

② 각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경우 총장은 사업 참여 학과 교수를 사업단 소속으로 겸무 발령할 수 있다.

③ 사업단의 공동업무는 양 사업단장이 상호 협의하여 수행한다.

제6조(위원회의 구성) 각 사업단은 사업단의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, 자체평가위원회, 자문위원회 등을 둘 수 있다.

제7조(적용)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, 동 사업과 관련한 총괄대학 등의 지침에 따른다.

제8조(그 밖의 사항)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각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(2020. 12. 9.)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규정의 폐지) 이 규정은 이 사업 종료시 자동 폐지된다.